

[노사합의서]

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(이하 “노동조합” 이라 한다)은 2026년도 2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6.06.30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합의사항 제1호 및 제2호는 관련 제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 시행하며, 공사와 노동조합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1. 공사 직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단, 휴가는 해당 월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, 분할,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2. 공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단, 새내기 도약휴가는 소급, 이월, 시간단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3. 공사와 조합은 현금없는 주차장 사업 추진에 따라 합리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 단체협약 제25조(노동시간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에 합의한다.

현 행	개 정
【단체협약 제25조 제3항】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, 노상 주차관리원(노외주차관리원은 수입금 전 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함)의 입금시간(20분), 복지택시 운전원의 복귀시간(10분 단위), 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 및 각종 행사시간 등을 말한다.	【단체협약 제25조 제3항】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, 복지택시 운전원의 복귀시간(10분 단위), 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 및 각종 행사시간 등을 말한다.

2026. 6. 30.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
위원장 이수창

이수창

부천도시공사

사장 하정수

하정수.